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3-05

수 원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2구합7873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시 ◯◯구청장
변 론 종 결	2023. 8. 10.
판 결 선 고	2023. 9. 21.

주 문

1. 피고가 2021. 5. 2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04,917,300원, 지방교육세 2,607,870원의 부과처분 중 취득세 28,613,81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5. 2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04,917,300원, 지방교육세 2,607,870원의 부과처분 중 취득세 25,35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지방교육세 2,535,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3-05

이 유

1. 기초사실

가. 노인복지법에 따른 분양형 노인복지주택

1) 노인복지법 제31조에 의하면,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노인주거복지시설(제1호), 노인의료복지시설(제2호), 노인여가복지시설(제3호), 재가노인복지시설(제4호), 노인보호전문기관(제5호) 등으로 구분되고,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면, 노인주거복지시설은 양로시설(제1호), 노인공동생활가정(제2호), 노인복지주택(제3호)으로 구분된다.

2) 노인복지법이 2015. 1. 28. 법률 제13102호로 일부개정되어 2015. 7. 29. 시행되기 전까지는,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서 **노인복지주택**을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었는데(이하 노인복지주택 중 분양을 위한 시설을 '분양형 노인복지주택', 임대를 위한 시설을 '임대형 노인복지주택'이라 한다), 위 개정 시 같은 호에서 노인복지주택을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노인복지주택의 분양 관련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향후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은 폐지**하고 **임대형으로만 노인복지주택이 설치·운영**되도록 하였고, 다만 그 부칙 제2조(분양형 노인복지주택에 관한 경과조치)에서, 위 개정법률 시행 전에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거나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이 승인된 노인복지주택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였다.

나. 원고의 분양형 노인복지주택 취득 및 취득세 신고

1) 원고는 2021. 1. 25.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에 해당[1]하는 ○○시 ○○구 B 소재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3-05

'C건물' D호, E호, F호(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2) 구 지방세법(2021. 12. 28. 법률 제1865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에 의하면 '농지 외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4%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나, 같은 항 제8호에 의하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해당 부동산이 같은 호에 따른 '주택'인 경우 취득가액에 따라 1% 내지 3%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도록 하는 한편, 같은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면 유상거래로 위와 같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세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에 해당함을 전제로, 각 1%의 취득세율(취득당시의 가액이 6억 원 이하인 주택), 각 0.1%의 지방교육세율[2]을 적용하여 계산한 취득세 합계 8,450,000원 및 지방교육세 합계 845,000원[3]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처분의 경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21. 5. 20. 원고에게 구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각 12%의 취득세율[=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 4% + (중과기준세율 2% × 4)] 및 그에 따른 각 0.4%의 지방교육세율[4]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1)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구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1호 각 목외의 부분
3) D호 과세표준 265,000,000원 : 취득세 2,650,000원(1%) 및 지방교육세 265,000원(0.1%)
E호 과세표준 290,000,000원 : 취득세 2,900,000원(1%) 및 지방교육세 290,000원(0.1%)
F호 과세표준 290,000,000원 : 취득세 2,900,000원(1%) 및 지방교육세 290,000원(0.1%)
4) 구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1호 나.목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3-05

취득세 합계 104,917,300원 및 지방교육세 합계 2,607,870원(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조세심판결과

원고는 2021. 8. 17.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10. 11.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은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위 '주택'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은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에 해당하므로, 각 4%의 취득세율, 각 0.4%의 지방교육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하여야 하고, 한편 원고는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주택 유상거래로 인한 취득세율이 적용된다'는 잘못된 해석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같은 호에 따른 '주택'으로 보고 각 1%의 취득세율, 각 0.1%의 지방교육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를 신고·납부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과소 신고·납부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해서는 안된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정당한 세액은 각 4%의 취득세율, 각 0.4%의 지방교육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취득세 합계 33,800,000원 및 지방교육세 합계 3,380,000원인바, 이 사건 처분 중 25,350,000원(= 33,800,000원 - 기납부 취득세 합계 8,450,000원) 및 지방교육세 2,535,000원(= 3,380,000원 - 기납부 지방교육세 합계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3-05

845,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이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시행되던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에 의하면, 농지 외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는 과세표준에 4%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나, 같은 항 제8호에 의하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해당 부동산이 같은 호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취득가액에 따라 1% 내지 3%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데, 같은 항 제8호에서는 '주택'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제7호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제1호의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임시사용승인서나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후문 생략)

2) 주택법 제2조에 의하면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되고(제1호),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3-05

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제4호),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에 따른 주택법 시행령에서는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정하고 있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을 전제로, 제2조에서는 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에 관하여, 제3조는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에 관하여, 제4조는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에 관하여 각 규정하고 있는데, 제4조 제3호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 나.목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호 제3호의 노인복지주택은 준주택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건축법 시행령(2021. 5. 4. 대통령령 제3166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1] 제1호에서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공동육아나눔터(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를 말한다)·작은도서관(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1층에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제2호에서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이라고 각 규정하여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범위에서 노인복지주택을 제외하고 있고, 제11호에서 '노유자시설'을 별도로 규정하면서 나.목에서 "노인복지시설(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이라 규정하고 있으며, 노인복지법 제55조 제2항은 "이 법에 의한 노인복지주택의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관계법령에 불구하고 노유자시설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위와 같은 구 지방세법, 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규정에다가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3-05

갑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말하는 '주택'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같은 호에 따른 '주택'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해당 부동산이 주택법 제2조 제1호의 주택(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해당되어야 하고, 같은 조 제4호의 준주택의 경우 위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데, 주택법상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를 정하고 있는 주택법 시행령 제4조 제3호에서는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을 '준주택'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②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인 2021. 1.경 시행되던 노인복지법[5]에서는 임대형 노인복지주택만 설치·운영이 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제32조 제1항 제3호) 위 주택법 시행령 제4조 제3호에서 정한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호 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에 임대형 노인복지주택 외에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이 포함되는 것인지(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이 '준주택'에 포함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노인복지주택이 분양형 또는 임대형으로 설치·운영되다가 노인복지법이 2015. 1. 28. 개정되면서 임대형 노인복지주택의 설치·운영만 허용하기로 하면서도,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에 관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 분양형 노인복지주택도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점(노인복지법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의견도 동일하다), 주택법에 의

5) 현행 법률과 같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3-05

하면 단독주택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 내지 다.목에 따른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을, 공동주택은 같은 [별표 1] 제2호 가. 내지 다.목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하는데, 같은 별표에서 '노인복지주택'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명시하면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노인복지시설을 '노유자시설'로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이 주택법상 준주택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적어도 주택법상 주택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③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가 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일부개정되면서 노인복지법에 따른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을 같은 호에 따른 '주택'에 포함하도록 명시하였다가, 2018. 12. 31. 법률 제16194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다(주택의 범위에 관한 부분은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시행되던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와 같다).

구 지방세법(법률 제14475호)	구 지방세법(법률 제16194호)
8. 제7호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8. 제7호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3-05

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합하여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시설은 제외하되, **「노인복지법」(법률 제13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은 포함**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이하 생 략)

노인복지법이 분양형과 임대형 노인복지주택 중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을 폐지하기 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주택법에서는 노인복지주택을 주택법 제2조 제1호의 주택이 아니라 같은 조 제4호의 준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구 지방세법(법률 제14475호)에서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은 원칙적으로 주택법 제2조 제1호의 주택이라고 하면서도 이에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을 포함하는 것으로 명시하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3-05

였다가 해당 부분을 삭제하였다면[6],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은 더 이상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④ 피고는, 지방세법을 2018. 12. 31. 법률 제16194호로 일부 개정할 당시,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은 포함한다'는 부분을 삭제한 것은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에 대해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제11조 제1항 제8호)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취지가 아니라, 노인복지법의 개정으로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이 더 이상 노인복지시설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을 별도로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 대상이라고 명시할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이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이 아니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제 개정취지가 그와 같다고 하더라도[7], 이는 개정규정의 문언에 반하는 해석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아울러 노인복지주택은 그 구조가 공동주택과 마찬가지로 세대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가 아닌 일반인이 거주 목적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 사실상 현황이 주택과 다름없다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전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과 동일한 분양형 노인복지주택[8]을 취득하면서 이를 주택으로 보고 1%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 온 점 등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⑤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6) 이와 관련하여 부칙에서 별도의 경과조치 등을 두지 않았다.
7) 위 개정법률의 개정이유서에는 그와 같은 취지가 나타나 있지 않고, 피고가 변론종결 후 제출한 자료를 보더라도 그와 같은 취지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
8)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위치한 ○○시 ○○구 B 소재 C건물 중 다른 호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3-05

같다) 제2조 제3호는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는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세무서장이 원고 소유의 ○○시 ○○구 B 소재 C건물 G호 외 15세대(이 사건 각 부동산이 위치한 건물의 다른 호실로서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이다)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임을 전제로 2020. 11. 18. 원고에게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하자, 이에 원고가 위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6078), 위 법원은 2022. 8. 26.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인 C건물 G호 외 15세대는 주택법상 준주택에 해당하여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에서 규정한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의 주택)이 아니므로, 구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용판결을 선고하였고, ○○세무서장의 항소(서울고등법원 2022누60181)가 2023. 5. 16. 기각된 후,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도 확인된다.

⑥ 게다가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의하면 같은 호에 따른 '주택'은 주택법 제2조 제1호의 주택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임시사용승인서나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된 건축물이어야 하는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건축물대장에는 그 용도가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등기부에도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이라고 기재되어 있음[9]이 확인될 뿐이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정당 세액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은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9) 이 사건 각 부동산과 관련한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에도 '시설의 종류 : 노인복지주택'이라고 기재되어 있다(갑 제4호증).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3-05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서는 농지 외의 부동산의 취득에 적용되는 취득세율인 각 4%(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 및 그에 따른 지방교육세율인 각 0.4%(제151조 제1항 제1호 각목 외의 부분)를 적용하여야 하는바, 그에 따른 정당세액은 취득세 합계 33,800,000원 및 지방교육세 합계 3,380,000원[10]이다.

다. 과소 신고·납부에 따른 가산세 부과 여부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두66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471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각 부동산이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원고로서는 같은 법 제13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각 12%의 취득세율 및 그에 따른 각 0.4%의 지방교육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각 1%의 취득세율 및 각 0.1%의 지방교육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를 신고·납부하여 한 점, 그 후 피고가 각 12%의 취득세율 및 각 0.4%의 지방교육세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자,

10) D호 과세표준 265,000,000원 : 취득세 10,600,000원(4%) 및 지방교육세 1,060,000원(0.4%)
E호 과세표준 290,000,000원 : 취득세 11,600,000원(4%) 및 지방교육세 1,160,000원(0.4%)
F호 좌세표준 290,000,000원 : 취득세 11,600,000원(4%) 및 지방교육세 1,160,000원(0.4%)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3-05

이 사건 각 부동산이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같은 항 제7호 나.목에 따른 4%의 취득세율 및 그에 따른 0.4%의 지방교육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점, 결국 원고는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를 과소 신고·납부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각 4%의 취득세율 및 각 0.4%의 지방교육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정당한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보다 과소 신고·납부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함이 상당하다.

라. 소결

1)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정당한 세액은 각 4%의 취득세율 및 각 0.4%의 지방교육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취득세 합계 33,800,000원 및 지방교육세 합계 3,380,000원이므로, 원고의 과소 신고·납부분(취득세 3% 상당, 지방교육세 0.3% 상당)은 취득세의 경우 합계 25,350,000원(= 33,800,000원 - 기납부 취득세 합계 8,450,000원), 지방교육세의 경우 합계 2,535,000원(= 3,380,000원 - 기납부 지방교육세 합계 845,000원)이다.

2) 또한 취득세 과소신고 가산세는 합계 2,535,000원(= 25,350,000원 × 10%),[11] 취득세 납부지연가산세는 합계 728,812원(= 25,350,000원 × 0.025% × 115일[12]), 지방교육세 납부지연가산세는 합계 72,881원(= 2,535,000원 × 0.025% × 115일)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취득세(가산세 포함) 합계 28,613,812원(= 25,350,000원 + 2,535,000원 + 728,812원), 지방교육세(가산세 포함) 합계 2,607,881원(2,535,000원 + 72,881원)의 범위에서 정당한바[이 사건 처분 시에도 지방교육세는 각 0.4%의 세율을

11) 지방교육세의 경우 과소신고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구 지방세법 제153조 제1항).
12)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처분일까지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3-05

적용한 세액을 기준으로 과소납부분 및 이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 중 지방교육세 부분은 정당하다[13)], 이 사건 처분 중 취득세 28,613,812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13) 이 사건 처분 중 지방교육세 부분은 2,607,870원으로, 이 사건에서 정당 세액으로 본 금액인 2,607,881원과 11원의 차이가 있으나, 이는 계산방식의 상이함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3-05

관계 법령

▢ **구 지방세법**(2021. 12. 28. 법률 제1865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9. "중과기준세율"이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 가감하거나 제15조제2항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기준이 되는 세율로서 1천분의 20을 말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23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3. 원시취득: 1천분의 28

5.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천분의 23

6. 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1천분의 23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제1호의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임시사용승인서나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3-05

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제10조의3 및 제10조의5제3항에서 정하는 취득당시가액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지분으로 취득한 경우 계산식 부분, 생략)

가.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1천분의 10

나.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율. 이 경우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한다.

$$\left(\text{해당 주택의 취득당시가액} \times \frac{2}{3\text{억원}} - 3\right) \times \frac{1}{100}$$

다. 취득당시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1천분의 30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3-05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고·납부기한 이내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등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를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제150조(납세의무자)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 기계장비(제124조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항공기 및 선박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

제151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취득물건(제1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제12조의 세율(제14조에 따라 조례로 세율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세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제11조제1항제8호의 경우에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3-05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나. 제13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

제152조(신고 및 납부와 부과·징수)

①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가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및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자(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 한정한다)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64조제1항에 따라 담보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에 대한 담보 제공도 함께 요구할 수 있다.

제153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제152조제1항에 따라 지방교육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제152조제1항에 따라 지방교육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51조제1항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5조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 **구 지방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9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3-05

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합하여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시설은 제외하되, 「노인복지법」(법률 제13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3-05

을 말한다)에 따른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은 포함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 지방세기본법

제54조(과소신고가산세 · 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보다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이하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초과환급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환급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5조(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 또는 초과환급분(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고, 제4호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기간은 60개월(1개월 미만은 없는 것으로 본다)을 초과할 수 없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의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3-05

고지일까지의 일수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22. 6. 7. 대통령령 제3266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4조(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

법 제55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56조제2호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각각 1일 10만분의 22를 말한다.

부칙 <제32665호, 2022. 6.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납부지연가산세액의 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납부지연가산세를 이 영 시행 이후 납부하는 경우 이 영 시행일 전의 기간분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의 계산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제3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이 영 시행 이후의 기간분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의 계산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제3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22. 6. 7. 대통령령 제3266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납부불성실가산세·환급불성실가산세 등에 대한 이자율)

법 제55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56조제2호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각각 1일 1십만분의 25를 말한다.

▢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2. "단독주택"이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3-05

3.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주택법 시행령**

제2조(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에 따른 다중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

제3조(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

①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이하 "아파트"라 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에 따른 연립주택(이하 "연립주택"이라 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이하 "다세대주택"이라 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공동주택은 그 공급기준 및 건설기준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종류를 세분할 수 있다.

제4조(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거목 및 제15호다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의 노인복지주택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

▢ **건축법 시행령**(2021. 5. 4. 대통령령 제3166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3-05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공동육아나눔터(「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작은도서관(「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1층에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3)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4) 적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 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3-05

3)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한다)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라. 공관(公館)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공동육아나눔터·작은도서관·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가.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라.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교육기본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한다)

11. 노유자시설

가. 아동 관련 시설(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나. 노인복지시설(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다.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 노인복지법

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3-05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5. 노인보호전문기관
6. 제23조의2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
7. 제39조의19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제32조(노인주거복지시설)

① 노인주거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노인공동생활가정 :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노인복지주택 :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②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입소절차·입소비용 및 임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노인복지주택의 설치·관리 및 공급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주택법」 및 「공동주택관리법」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제55조(「건축법」에 대한 특례)

② 이 법에 의한 노인복지주택의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관계법령에 불구하고 노유자시설로 본다.

▢ 노인복지법(2015. 1. 28. 법률 제1310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2조(노인주거복지시설)

① 노인주거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3-05

2. 노인공동생활가정 :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노인복지주택 :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부칙 <제13102호, 2015. 1. 28.>

제2조(분양형 노인복지주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거나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이 승인된 노인복지주택은 제32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33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3조의3, 제56조제1항, 제56조의2 및 제6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노인복지법**(2015. 1. 28. 법률 제1310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노인주거복지시설)

① 노인주거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노인공동생활가정 :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노인복지주택 :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끝.